



제422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직무수행 적합성 관련 심의위원회 근거 마련 등 〉
■ 김문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390호)

2025. 2.

교 육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직무수행 적합성 관련 심의위원회 근거 마련 등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김문수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2025. 2. 24.
3. 회부연월일: 2025. 2.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에는 교육공무원의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등으로 휴직 또는 복직을 할 경우에 휴직을 명해야 할 필요성,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질병휴직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

최근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참담하고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하여 미진하게 운영되고 있는 질병휴직위원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공무원의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는 질병휴직위원회를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그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며, 시급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경우에 학교장이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구성원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및 제44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 직무수행 적합성 관련 심의위원회 근거 마련 등

개정안은 교육공무원의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는 질병휴직위원회의 명칭을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며, 시급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경우에 학교장이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구성원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및 제44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44조의3(직무배제) ① <u>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공무원이 학교구성원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피해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임용권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u>
<신설>	② <u>제1항에 따른 위해, 특별한 사유 및 분리조치의 방법·기간·장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신설>	제44조의4(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u>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교육공무원의 휴직자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u>

현행	개정안
	<u>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u>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 <u>1.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명해야 할 필요성</u> <u>2.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자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u> <u>3.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분리조치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u> <u>4. 제45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이 끝난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 적용 대상인지 여부</u> <u>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료전문가와 교육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u> <u>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대상 교육공무원, 동료 교직원,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u> <u>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교원 등에 대한 질병휴직 필요성, 휴직 종료 후 직무 감당 불능에 따른 직권 면직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교원 등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심의하는 질병휴직위원회(「교육공무원법」 등에 근거)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각 교육청별 규칙에 근거)를 운영하고 있음.

[표 1] 시·도교육청 질병휴직위원회·질환교원심의위원회 현황

구분	질병휴직위원회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5조(휴직기간 등)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질병휴직) •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교육부 예규)	• 각 교육청별 규칙
운영	• 전체 17개 교육청	• 서울 등 14개 교육청 * 부산, 경기, 충북 교육청은 규칙이 제정되지 않음
대상	• 교육공무원 중 해당 교육공무원	• 전체 교원 중 해당 교원
심의 사항	• 해당 교육공무원에 대한 아래 조항의 조치(휴직, 직권 면직) 필요성 • 아래 조항에 따라 휴직한 교육공무원의 복직 후 정상 근무 가능 여부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질병휴직), 제7호의3(불임·난임휴직) -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휴직 관련 직권 면직)	•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적·지속적인 정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아래 조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교원의 교직수행 가능 여부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질병휴직) -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휴직 관련 직권 면직) -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1호(질병휴직) 및 제58조제1항제1호(휴직 관련 직권 면직)

주: 1. 부산, 세종, 경기, 충북 교육청은 질병휴직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경북교육청은 교원 직무수행심의위원회로 운영

2. 서울교육청은 심의사항을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질병휴직),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휴직 관련 직권 면직)에 대한 것으로 규정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및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 제1조 및 제2조, 각 교육청별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제1조 및 제2조 내용 정리

최근 4년간(2022~2025년) 기준으로, 질병휴직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서는 2022년 4건, 2023년 20건, 2024년 41건, 2025년 2월 기준 5건이 심의되었고, 대구, 광주, 대전, 세종, 강원 교육청 소관 위원회에서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표 2] 시·도교육청 질병휴직위원회·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심의건수

(단위: 건)

구분	2022	2023	2024	2025.2.	합계
서울	-	2	5	-	7
부산	-	1	-	-	1
대구	-	-	-	-	0
인천	2	2	9	1	14
광주	-	-	-	-	0
대전	-	-	-	-	0
울산	-	1	2	-	3
세종	-	-	-	-	0
경기	-	2	3	-	5
강원	-	-	-	-	0
충북	-	1	6	2	9
충남	-	3	3	-	6
전북	2	3	3	1	9
전남	-	-	1	-	1
경북	-	2	8	-	10
경남	-	-	1	1	2
제주	-	3	-	-	3
합계	4	20	41	5	70

자료: 교육부

위원회 심의건수가 적은 것은, 위원회를 개최해야 할 사유가 적게 발생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교원에 대해 휴직을 명할 필요성을 판단해야 하거나, 휴직 기간 종료 또는 휴직 사유 소멸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교원에 대하여 면직해야 할 필요성을 판단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해당 사안의 의견청취나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교원 또는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교원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교육공무원의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는 질병휴직위원회의 명칭을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며, 시급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경우에 학교장이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구성원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를 현행 질병휴직위원회와 비교하여 ① 위원회 명칭, ② 위원회 구성, ③ 위원회 자문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3] 위원회 관련 현행과 개정안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명칭	질병휴직위원회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3명 이상 * 의료전문가 1명 이상 포함 *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비공무원	•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 * 의료전문가와 교육전문가 포함
자문 사항	<자문 재량>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질병휴직) 또는 제7호의3(불임·난임휴직)에 따른 휴직을 명해야 할 필요성 • 법 제44조제1항제1호 또는 제7호의3에 따른 휴직자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이 끝난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휴직 관련 직권 면직) 적용 대상인지 여부 <자문 의무> • 공무상질병휴직 교육공무원이 동일 사유로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 총 휴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자문 의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 제44조제1항제1호(질병휴직) 휴직을 명해야 할 필요성 -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자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분리조치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 제45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이 끝난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휴직 관련 직권 면직) 적용 대상인지 여부

주: 현행은 질병휴직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과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를 기준으로 함

자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질병휴직),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중 해당 내용 정리

① 먼저, 개정안 제44조의4제1항은 위원회 명칭을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위원회 명칭이 ‘질병휴직’으로 특정되어 개정안에 따라 확대(분리조치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에 대한 자문 포함)된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비해 제한적인 측면이 있고, 위원회의 심의 목적이 교육공무원의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구성원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이에 부합하는 명칭인 것으로 보임.

② 다음으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현행 질병휴직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명 이상으로 구성되나, 개정안의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는 제44조의4제3항에서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 구성원으로 현행 질병휴직위원회에서 포함하는 의료전문가에 더하여 교육전문가도 포함하도록 하여,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③ 또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자문사항)**으로 현행과 개정안 제44조의4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는 ‘질병휴직을 명해야 할 필요성, 휴직자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휴직 관련 직권 면직 적용 대상 여부’를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이에 대한 위원회 자문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하는 반면, 개정안은 제44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경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차이가 있음.

개정안에서 자문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질병휴직과 관련 직권 면직 적용 대상에 대한 판단에서, 특히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회 자문을 의무화하여 임용권자 등이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법령에 비해 의무적으로 자문을 거치도록 강화된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경우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 제44조의4제2항제3호는 자문사항으로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분리조치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분리조치’는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사항임.

구체적으로 개정안 제44조의3제1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공무원이 학교구성원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피해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임용권자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교육공무원이 학교구성원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학교장이 신속하게 조치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다만, 교육공무원을 분리하는 조치는 해당 교육공무원의 신체를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것에 해당됨.

이와 관련하여,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헌법」 제12조에 따라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며, 이는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는 점¹⁾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조치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관련된 내용은 개정안과 같이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분리조치는 긴급한 필요를 고려하여 학교장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데, 학교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위해를 가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분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 제44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내용과 같이, 분리조치에 적합한 공간을 포함하여 분리된 교육공무원에 대한 처우 방안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행법에서 분리조치 사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에 따라 피해교원의 보호를 위해 가해자로부터 분리하는 경우,²⁾ 「학교폭력

1)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②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이하 “분리조치”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리조치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교원의 반대의사가 있는 경우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교원이 분리된 경우

②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교원의 분리(이하 “분리조치”라 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에 따라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가해자로부터 분리하는 경우³⁾ 등이 있음.

아울러, 학교의 장이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현저하게 지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직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 조치하되 긴급한 경우 학교의 장이 우선 직무배제를 하고 임용권자에게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08225호)과

학교전담경찰관이 해당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긴급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즉시 경찰서장 또는 교육청에 보고하고 긴급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8139호)이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
1.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분리조치에 관한 피해교원의 의사를 확인할 것
 2.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조치의 기간을 정할 것
 3. 분리조치에 필요한 별도의 공간을 학교 내에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조치의 예외)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2. 가해자 또는 피해학생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3. 법 제17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한편, 개정안은 위원회 명칭, 구성, 자문사항, 의견청취 등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기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직무수행 적합성 관련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각 개정안은 위원회와 관련한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의 개정안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표 4] 심의위원회 관련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현황

구분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대표 발의자	발의일/ 회부일	주요 내용
1	교육공무원법 (제2208091호)	고동진 의원	2025.2.12./ 2025.2.13.	·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안 제44조의3 신설)
2	교육공무원법 (제2208113호)	박덕흠 의원	2025.2.12./ 2025.2.13.	· 정신질환자를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 (안 제10조의4제5호 신설) ·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안 제43조의3 신설)
3	교육공무원법 (제2208138호)	강경숙 의원	2025.2.13./ 2025.2.14.	·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안 제44조의3 신설)
4	교육공무원법 (제2208153호)	김기현 의원	2025.2.14./ 2025.2.17.	·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휴직한 교원의 복직시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심의 의무화(안 제45조의2 신설)
5	교육공무원법 (제2208160호)	고민정 의원	2025.2.14./ 2025.2.17.	·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휴직교원 복직시 심의 의무화 (안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5까지 신설)
6	교육공무원법 (제2208225호)	조정훈 의원	2025.2.17./ 2025.2.18.	· 교육공무원 직위해제 사유 및 직무 배제 절차 신설 (안 제44조의2) ·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심의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통합하고 그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4조의3)
7	교육공무원법 (제2208232호)	윤준병 의원	2025.2.18./ 2025.2.19.	·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자를 채용 과정에서부터 배제(안 제10조의4제5호 신설) ·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 직무 수행이 곤란한 자의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질환교육공무원재활센터를 설치 (안 제44조의3 신설 등)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문 의 처

02)6788-5189